

부천만화대상 운영 규칙

제정	2006. 04. 14. 규칙 제2호
전문개정	2009. 07. 13. 규칙 제20호
개정	2010. 07. 02. 규칙 제31호
개정	2011. 06. 02. 규칙 제37호
개정	2012. 06. 20. 규칙 제50호
개정	2013. 06. 20. 규칙 제54호
개정	2014. 06. 03. 규칙 제63호
개정	2016. 04. 05. 규칙 제77호
개정	2017. 05. 03. 규칙 제83호
개정	2018. 04. 19. 규칙 제101호
개정	2019. 05. 17. 규칙 제112호
개정	2021. 06. 04. 규칙 제145호
개정	2021. 12. 22. 규칙 제148호
개정	2023. 03. 10. 규칙 제160호
개정	2025. 05. 27. 규칙 제19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부천만화대상(이하 “만화대상”이라 한다)의 선정과 시상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목적) 만화대상은 우수한 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만화출판 및 창작 장려를 통하여 한국 만화 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시행한다.

제3조(시상내역) <삭제 2025. 05. 27.>

제4조(후보작품 자격) ① 만화부문의 후보작품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출판되거나 인터넷에서 연재가 된 작품으로 한다.

② 만화부문의 경우, 웹툰 30회차 이상 연재되었거나 단행본 출간 1권 이상이 완간된 작품에 한한다. 제 1항의 기간 내 완결된 작품일 경우 회차에 상관없이 자격을 부여한다.

③ <삭제 2025. 05. 27.>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작품 자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05. 27.>

[전문개정 2021. 06. 04.]

제5조(후보작품 추천) <삭제 2021. 06. 04.>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만화대상의 운영 및 후보작품의 추천과 선정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 05. 27.>

1. 만화대상 추천위원회
2. 만화대상 선정위원회

② <삭제 2025. 05. 27.>

③ 추천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는 만화관련 단체 및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각 7인 내외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후보작품의 추천과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인과 만화관련 전문가를 추천과 선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04. 19., 2021. 12. 22.]

[전문개정 2018. 04. 19., 2021. 06. 04., 2021. 12. 22.]

제7조(심사기준) <삭제 2021. 06. 04.>

제8조(수상작 선정) <삭제 2021. 06. 04.>

제9조(수상작 선정의 취소) ① 수상작품이 관련 법규를 위배하였거나 통상 관례상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장은 수상작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 할 경우 시상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된 작품의 선정취소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작가에게 수여된 상과 시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4. 06. 03., 2016. 04. 05., 2021. 06. 04.>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원장은 차점작을 수상작으로 하거나 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시상) ① 만화대상의 시상은 당해 연도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상자는 해당 작품의 작가로 한다.

③ 시상 부문, 수상 작품, 상금, 훈격 등은 당해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5. 06. 02., 2025. 05. 27.]

제11조(수상자 관리) 원장은 대상 수상자에게 익년도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공식 포스터의 원화제작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만화대상 작품 선정에 참여한 추천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과 기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06. 03., 2021. 06. 04.]

[전문개정 2014. 06. 03., 2021. 06. 04.]

제13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 및 제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6. 04. 14.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13. 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7. 02. 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6. 02.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6. 20. 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6. 20. 규칙 제54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03. 규칙 제63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6. 02.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4. 05. 규칙 제77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5. 03. 규칙 제83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4. 19. 규칙 제101호)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5. 17. 규칙 제1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04. 규칙 제1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2. 규칙 제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10. 규칙 제1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5. 27. 규칙 제1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5. 05. 27.>

(별표 2) <삭제 2021. 06. 04.>